

갑오년(甲午年)희망의 새아침

양양의 동해바다로 솟구치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갑오년(甲午年) 희망의 새아침
양양의 동해바다로 솟구치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 첫 태양이
해돋이의 고장을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솟구쳤다.

늘 한결같은 의기투합과 신의로
뽄뽄 뭉친 군민들은 송이등대
사이로 내민 새해를 반갑게 맞았다.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말처럼
새해 우리군민들은 쉼 없이 내달리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리라.

지 면 안 내

- 2면 공립 서문어린이집 6일 개원
- 5면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①
- 8면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11면 군정종합

- 3면 우리군의회 제195회 정례회 개최
- 6면 자동차세 연납안내, 정보화교육안내
- 9면 과태료처분 기준
- 12면 생활정보

- 4면 공항공사 어려운 이웃 지원
- 7면 보육료지원 사업, 보건소 진료 안내, 기상정보
- 10면 재난대피요령,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련

공립 서문어린이집 6일 개원

최신식 시설로 신축 완료



공립 서문어린이집이 새롭게 단장하고 6일부터 개원한다.

지난 2010년 9월 노후된 서문어린이집의 신축계획을 세운 뒤 지난해 국비를 포함해 총 7억2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345.56㎡의

면적에 4개의 보육실과 원장실 및 교사실, 교재실, 주방, 놀이터 등 최신식 시설로 완공했다. 서문어린이집은 80명 정원으로 최순우 원장이 위탁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 구슬땀”

양양농협 이현율 · 이상신 씨 식육처리기능사 취득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율 · 이상신(39) 주임이 지난해 나란히 국가공인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동갑내기로 양중 · 양고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에 도전, 단 번에 합격하며 그동안 익힌 세련된 솜씨로 각종 식육의 맞춤형 정형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함께 양양농협에 입사한 이들은 자신이 처리하는 식육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담보로 보다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증 도전에 나서게 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6~8마리의 양양한우를 도축해 판매하고 있는 정육코너에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자는 목표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두 달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뼈를 발라내는 골발에서부터 선별, 부위별 가공까지 다양한 식

육처리 기법을 익혀 맞춤형 판매에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양양한우와 양돈 등 식육의 크기와 중량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 맞춤형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이런 욕구에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이 큼니다.”

2011년부터 함께 정육코너로 옮겨 식육처리에 나서고 있는 이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양양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사육한 양양한우와 양돈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늦게 시작한 업무지만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서로 식육처리 과정을 연구하며 토론한 것이 자격증 취득의 지름길이 됐다고 한다.

보다 세련된 식육처리로 고품질 양양한우와 양돈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이들은 온종일 무거운 식육을 처리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대하고 있어 친절한 직원으로 통한다.

“올해는 고품질의 양양한우와 양돈이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련된 솜씨로 소비자들 이 원하는 맞춤형 식육처리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이들은 설 명절에 대비한 양양농협 하나로마트만의 맞춤형 식육상품 포장 개발에 여념이 없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강원도지사 표창

양양초등학교 우수상 수상...강원도 홍보활동 강화



강원도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도내 초등학교 대상 아동안전지도 작품 전시회에서 양양초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해 도내 151개 초등학교 3,400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전개한 가운데 양양에서는 양양초교를 비롯해 조산초교, 강현초교, 인구초교 등 4개 초등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

양양초교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아동안전지도 작품전시회에

서 학생들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안전지도가 면밀하고 손쉽게 보며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 받아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저항능력과 판단력이 미흡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3월부터 도내 151개 학교가 참여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해 안전의식 고취에 나서고 있다.

“세대 넘는 사랑의 발표회” 감동

서면 꾸매그린아동센터, 실버합창단과 합동 공연



서면 산골아이들이 할머니 · 할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발표회’를 가져 감동을 전하고 있다.

서면 꾸매그린지역아동센터는 지난달 상평초교 꿈나무교실에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맘껏 뽐내는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아이들은 지난 한해 특기 적성으로 익힌 보컬과 우쿨렐레 연주, 댄스 요들송 공연을 선보였으며, 요들송 합창은 서면 북평리에 귀농한 이필래 씨의 지도로 조화로운 하모니를 선사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아이들의 발표회에는 수장리 실버합창단이 함께 공연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김남순 씨의 지도로 무대에 오른 실버합창단은

이날 유년시절로 돌아가 그동안 익힌 노래실력을 발휘, 앵콜송 요청이 들어오는 등 첫 공연을 성황리에 치러냈다.

산골아이들과 실버합창단의 세대를 뛰어넘는 공연이 이어지자, 자리를 함께 한 관객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며 감동의 도가니를 연출했다.

꾸매그린아동센터 김은희 교사는 “이번 발표회가 조그마한 산골마을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된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미래희망인 아이들이 성장하는 열매가 되도록 새해에는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했다.



의 정 소 식

우리군의회 제195회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강도 높게 실시...총 23건 심의 의결

우리군의회(의장 김일수)는 김일수 의장 주재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제195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최홍규 위원장을 필두로 행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최홍규 위원장은 체육관 인근 주차장이 협소해 대단위 행사 개최 시 제방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종합운동장 공사로 확보된 토사를 이용하여 남대천 둔치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마을별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올해 이장 한마음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만큼, 내년부터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반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건의했다.

김택철 부의장은 종합버스터미널 신축사업에 대하여 우리군 버스터미널이 타 지역에 비해 노후되고 협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맞물려 있는 만큼 국토 교통부와 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 신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미래전략과를 폐지하고 오색삭도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미래전략과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오색삭도 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며 오색삭도 문제는 우리군과 강원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한시적 팀 구성에 대하여 강원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당부했다.

김현수 의원은 오색삭도와 관련하여 오색삭

도 부결에 대해서는 오색케이블카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뿐만 아니라 양양군민 모두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1차 부결이후 행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도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환경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양양군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3차 도전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오세만 의원은 양양읍과 현남면, 강현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북면과 서면, 손양면은 양양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양양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라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방사능 검사의무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바 있는데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우섭 의원은 워터비스 해양심층수 기반조성 사업에 많은 군비가 소요된 것에 반하여 현재 경영난으로 좌초 위기에 있고 워터비스 고

용인들도 직장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양군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양양골프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당초 산불피해로 인하여 민관과 기업이 적극 협력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일부 변질된 부분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에 와서 조기착공보다는 주민과 기업, 행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숙 의원은 군부대 측과 아파트 등 거주지 대책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고 군부대 측 여론에 의하면 우리 양양군이 타지역에 비해 군장병들 거주문제 등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인구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월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폐수배출 분담금을 1/N로 부담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입주업체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군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건물번호의 주소체계를 통해 위치 찾기 편의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양양을 치면 새로운 양양이 보입니다”

♣주소검색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113 ← 1 양양로
Yangyang-ro



양양군

공항공사 어려운 이웃 지원

양양읍 율리 최오성 씨 난방비 지원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지사장 윤철환)는 지난 10일 손자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최오성 씨를 찾아 난방비를 지원하고 세탁

기를 교체해 줬다. 공항공사 직원들은 이날 양양읍 율리 복지주택을 찾아 최 씨에게 생필품도 전달하며 위로했다.

정용환 강원우정청장 양양우체국 방문

직원들과 대화의 장...우편서비스 증진 당부



정용환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난 7일 양양우체국을 새해 초도 방문해 임근순 국장으로 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우편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청장의 방문 자리에는 관내 별정우체국장들도 자리를 함께 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수도 계량기 동파예방 안내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헛웃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수도계량기가 외부에 있어 동파 발생 우려가 크므로 보온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밤사이 또는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아울러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 배관 동파예방 방법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헛웃 등으로 감싸서 보온하고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하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2012년 4월 29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소유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조사기간 : 2014. 4.28일까지

2. 조사결과 제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

-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조사결과서류 등록 후 민원24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양양군수)에게 제출

3. 조 사 자 : 건축물 소유자

4.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5. 조사대상 건축물

○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다음에서 언급하는 건축물

가.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라. “가”부터 “다” 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시설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의료시설 ③ 노인 및 어린이 시설(단, 어린이집은 430㎡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환경관리과(☎ 670-2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슬레이트처리사업 신청·접수

1. 목 적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통한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

2. 사업대상

○ 양양군에 소재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3. 신청기간 : 2014. 2. 1 ~ 2. 15

4. 신청장소 : 군청(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 670-2183) 또는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소유자 주소 및 연락처, 주택소재지 지번 등)

6.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비(50%), 군비(50%)

○ 가구당 지원(보조)단가 : 2,880천원(수수료 포함)

※ 지원(보조)단가 이상 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환경관리과(☎ 670-2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①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1. 오색령의 지명에 관한 기술
 2. 한계령으로 지명 변천 기술
 3. 오색령·한계령 고증 비교
- III.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과 복원절차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2. 현행법상 지명 복원절차
- IV. 맺는 말

이번호 부터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우리고장 문화유산 되짚어보기 논문을 실습니다.

I. 문제의 제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대대(祖上代代)로 지켜온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자연문화(自然文化)의 유산(遺産)일 뿐 아니라 자자손손 길이 대물림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論意)의 시작과 끝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논의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과거의 잘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남기는 교육적인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양양군의 개략적 지리환경은 북쪽으로는 속초에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강릉과 접해 있다. 서쪽인 내륙으로는 인제군이 있지만, 양양과 내륙의 사이에는 분수령(分水嶺)이 되는 험준한 백두대간이 놓여 있어서 원래부터 내륙과의 교통이 불편하였다. 다만 남북으로는 교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지명은 일반 어휘(語彙)에 비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성격이 있어서 인문학적 유물로 취급된다. 정치체제가 바뀌거나, 또는 외부의 침입에 의하여 통치세력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상례(常例)이므로 이들

토착주민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영(嶺)의 기능은 귀향(歸鄉)보다는 상경(上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시의 인제현(麟蹄縣)과 양양부(襄陽府)의 관점에서 볼 때, 인제현에 속한 한계리와 양양부에 속한 오색리에서 영(嶺)의 기능과 관련된 지역은 출발점인 오색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래로 오색령이라 이름 하였던 것은 타당한 이름의 부여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양양부에서 내륙인 경사(京師)서울로 통하는 길은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지도를 보면 오색령은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춘천부(春川府) 기린계(棋麟界)로 통하던 길이었으나 도로 기능을 잃었다.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하듯, 지명(地名)은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유산을 상징하고, 사회 구성원의 얼이자 정신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본 논의(論意)의 목적은 오색령(양양군 서면

과 인제군 북면을 연결하는 고개, 해발 920m)의 실체(實體)를 바로 찾기 위해서 고문헌(古文獻)·고지지(古地誌)·고지도(古地圖)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한계령으로 왜곡(歪曲) 기록된 것이 명백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잡고자한다.

II. 五色嶺 地名에 관한 考察

1. 五色嶺의 歴史的 記錄

1) 고문헌에 나타나는 오색령

(1)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년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서두에 “한 줄기가 남쪽으로 200여 리를 뻗어 가다가 산 모양이 우뚝 솟고 험준함이 대략 금강산과 같은 것이 설악산(雪嶽山)이다. 그 남쪽에 소솔령(所率嶺)이 있다. 설악산 동쪽 한 줄기가 또 하나의 작은 악(岳)을 이룬 것이 천보산(天寶山)이니 하늘이 눈비 내리려고 하면 산(山)이 저절로 울기 때문에 혹(或) 울산이라고도 한다.” 라고 적었다.



강원도 한옥 건축지원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최근 고품격 주거문화, 친환경 건축 등 한옥 가치의 재조명
- 국내·외 관심의 증가로 인한 한옥의 잠재적 수요증가 예상
- 한옥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비용의 문제로 확산에 한계
- ☞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관형성과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한옥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23년
- 총사업량 : 18개시군 300동 (연간 30동)
- 총사업비 : 90억원
- 지원대상 : 주요구조가 목조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한옥)

○ 지원내용

- 보조금 : 호별 최대 3천만원
- 융자금 : 호별 최대 5천만원(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경우 우선지원)
- ※ 10호 이상 한옥마을 조성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설치 별도 지원

□ '14년 사업개요

- 사업량 : 30동
- 사업비 : 800백만원
-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한옥 전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준 : 건축 바닥면적 60㎡ 이상
- 지원내용 : 호당 보조금 3천만원(신청기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670-2165

“공항 이용객에 최고의 서비스 제공”

(주)에어코리아 박준식 양양국제공항 초대 지점장

지난 1일 취임한 박준식 (59, 사진) (주)에어코리아 양양국제공항 초대 지점장은 지난해 12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중국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진에어 이용객들의 탑승수속을 비롯해 출입국 절차, 수하물 업무, 탑재관리, 외항기 여객 운송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양읍 성내리가 고향인 박 지점장은 양양중(16회)·고(19회)와 강원대 법학과(74학번)를 졸업하고 지난 1980년 대한항공 법무

실에 입사해 대한항공 속초 지점과 전주지점, 제주공항 등에서 31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1년 정년퇴임했다. 박 지점장은 “진에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고향 분들처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에어코리아는 대한항공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08년 창립한 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에서 항공사의 지상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안내

■ 자동차 연납(연세액 일시납부)제도란?

현행 자동차세법은 차량을 먼저 운행하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는 후납제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년 세액을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월에 연세액일시납부 : 1년간 세액의 10% 공제
3월에 일시납부시 : 4~12월 기간분의 10% 공제
6월에 일시납부시 : 7~12월 기간분의 10% 공제
9월에 일시납부시 : 10~12월 기간분의 10% 공제

■ 올해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을까요?

귀하께서는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시고 10% 할인혜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올해 1월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연세액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린 것입니다.

■ 연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만약 연납고지서를 받으시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정상부과 (할인혜택 없음) 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된 경우 어떻게 되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후 이전 및 폐차가 된 경우에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부서 (☎ 033-670-2147) 로 알려주시면 기납부 세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온라인 송금(계좌이체)

○ 가상계좌납부

- 납세자 개인별로 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은행에 가지 않고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계좌로 납부액을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언제나 납부 가능
- 고지서 분실시에도 납부 가능
- 납세자 고유의 가상계좌 번호이므로 대리인도 납부 가능

○ 온라인송금(자동이체)

- 지방세 온라인 송금(계좌이체) 납부 안내
-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또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갖고 계신 경우에,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양양군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 : 농협
계좌번호 : 820-01-002786
예금주 : 양양군금고

1. 납세자와 입금자가 다르거나,
2. 세액이 틀릴 경우,
3. 여러 세목을 한번에 입금하실 경우에는 확인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송금 전후 세목별 담당자와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납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지로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1) 인터넷지로 사이트 (<http://www.giro.or.kr>)에 접속합니다.
 - (2) 납부고객용을 클릭합니다.
 - (3)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og-in버튼을 클릭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회원 가입한 후 로그인)
 - (4) 받은청구서함을 클릭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있으면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5)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내역을 선택후 납부계좌번호 선택 및 비밀번호를 입력 후 "선택항목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처음접속하시는 분은 로그인후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청구서등록을 하여주시고, 납부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하시려면

- (1) 로그인후 상단메뉴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를 클릭하거나,
- (2) 메인화면에서 납부가능 요금 중 해당세목을 클릭하시면 조회 납부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 이동후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납세번호를 입력하시면 청구된 내역이 조회되고 위의 (4)번부터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를 모르실경우 세무회계과로 전화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033) 670-2274, 2148

매월초(1일~8일)에는 납부자료가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 기간에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납부

○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 안내

양양군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코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동이체납부제도란?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등 정기분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 편리한 점
 - 은행방문의 필요가 없고
 - 가산금 걱정이 없으며
 - 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가능은행 : 모든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포함)
 - 방문접수 : 군청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신청서 비치)
 - FAX신청 : 신청서 작성후 033-670-2793로 발송
 - 인터넷 신청 : <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유용한서비스의 자동이체신청 (지로번호선택 : 양양군 7002166)

※ 자동이체 신청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033-670-2296

■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납부안내

- 납부가능 세목 : 지방세 전세목 가능
- 대상카드 : BC, 국민, 외환, 삼성, LG, 신한, 현대 카드 등 가능합니다.
- 납부장소 및 방법은?
고지서를 발부 받아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및 농협중앙회양양군지부 및 군청출장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시 좋은점은?
납기내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시 가산세(가산금) 부담 경감 자동차세 일시납부(년납)시 세액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장기보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용카드납부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033-670-2296

문의 세무회계과 033-670-2297

정보화교육안내

양양군의 정보화교육장은 양양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연중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달의 교육과정안내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시간
주간반	한글 2010	2014. 1. 13~2. 21(5주)	오전 10시 ~ 12시
야간반	엑셀 2010	2014. 1. 13~2. 21(5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다음달 교육과정안내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시간
주간반	파워포인트 2010	2014. 2. 24~4. 4(6주)	오전 10시 ~ 12시
야간반	한글 2010	2014. 2. 24~4. 4(6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 교육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교육문의 및 신청 : 양양군청 안전행정과(670-2463)

보육료지원 사업

■지원대상

○만0세~4세 보육료 지원

가)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나) 기타 만0~4세 보육료 지원 아동(2층~5층)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0~4세아동

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영유아

○만5세아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5세아도 지원)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하되,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4,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지원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다문화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셋째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셋째이상 만0~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소득제한 없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등 타보육료 중복지원 제외)

○보육료 감면대상자 선정기준 (11년 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 만5세아	416	480	537	588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방과후보육료	141	173	205	237

※ 7인이상 가구 : 6 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시점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

0연령기준

구분	기준일자
만0세아	'01. 1. 1 ~ '이후 출생
만1세아	'09. 1. 1 ~ '07. 12. 31
만2세아	'08. 1. 1 ~ '06. 12. 31
만3세아	'07. 1. 1 ~ '05. 12. 31
만4세아	'06. 1. 1 ~ '04. 12. 31
만5세아	'05. 1. 1 ~ '05. 12. 31

0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구분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민간)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 (가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70%	정부지원 단가 100%	만0세	394,000	755,000	755,000
		만1세	347,000	521,000	521,000
		만2세	286,000	401,000	401,000
		만3세	197,000	238,000	238,000
		만4~5세	177,000	222,000	249,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0~12세	394,000	394,000	394,000

■보육료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접수)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조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이용 동의서,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777

보건소 진료 안내

■진료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진료안내

내과진료	1차 진료와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
치과진료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도포,레진충전
한방진료(지소)	시술(침,뜸,부항) 및 한약조제(엑스산제)
물리치료실 운영	물리치료

■진료비

내과/치과	한방지소	물리치료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레진충전
처방: 500원 처치: 1,100원	1,300~2,200원	1,600원	30,000원	치아 1개당 4,210원	약당 4,210원	치아1개당 20,000원

■예방접종안내

○영·유아 예방접종

접종명	기초접종	추가접종	준비물	접종일
결핵(B.C.G)	4 주 이내	-	예방접종수첩 (무료)	매주 화요일 오전 (09:00 ~ 11:30)
B 형간염	0,1,6 개월	-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3시까지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2,4,6 개월	15~18개월 만4~6세	〃	〃
피프테리아,파상풍(Td)		11~12세	〃	〃
소아마비(IPV)	2,4,6개월	만4~6세	〃	〃
홍역,볼거리,풍진(MMR)	12~15개월	만4~6세	〃	〃
수 두	12~15개월	-	〃	〃
일본뇌염	12~36개월	만6세, 12세	〃	〃
뇌수막염(Hib)	2,4,6개월	15~18개월	〃	〃

○임시 예방접종

예방접종 종류	접종대상	접종시기	비고
장티푸스	식품접객업종사자, 집단급식소종사자, 급수시설관리자 등	5 월 ~ 6 월 무료	무료
유행성출혈열	군인 농부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	7 월 ~ 8 월	무료
인플루엔자	만성질환자 및 노약자 등	9 월 ~ 10 월	무료/유료

문의 보건소 033-670-2492

'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13. 12. 6.)부터 선거일('14. 6. 4.)까지
- 제한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 ⇒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가능함(「정당법」제37조제2항).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 · 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 · 도당의 당사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 · 전화번호 · 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체 당부명의로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 · 정책의 설명회 · 토론회 · 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 · 현수막을 주체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직무상 · 업무상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 ·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 문화 · 체육 · 예술 ·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인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 · 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 민속절 · 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 · 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 · 기관 · 단체 ·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장의 이 · 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 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 · 단체 · 시설방문 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 · 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13. 12. 6.)부터 선거일('14. 6. 4.)까지
- 제한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 이하 이 목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4. 금지행위의 예외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공직선거법 제60조의3)
 -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로 보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연락소장 포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가능 함(「정당법」제37조제2항).

3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법 제89조②)

-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13. 12. 6.)부터 선거일('14. 6. 4.)까지
- 제한내용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기관 · 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 현수막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 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 · 광고는 가능함.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신고(법 제108조③)

- 주 체 : 누구든지
- 신고기간 : 선거일전 180일('13. 12. 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4. 6. 4. 18:00) 까지
- 신고대상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 ·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함.

5. 신고대상 예외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 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제외)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법 제86조⑤⑥)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법 제86조⑤)
 -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소속공무원 포함)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13. 12. 6.)부터 선거일('14. 6. 4.)까지
 - 제한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등 참석 제한(법 제86조⑥)
 -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13. 12. 6.)부터 선거일('14. 6. 4.)까지
 - 제한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관련판례 및 주요 질의선례
 - ㉠ 공공기관 행사
 - 공공기관 행사참석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 · 방법 · 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 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준하는 행사로 봄.
 - 공공기관 내부행사 참석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 · 취임 행사에 참석 하여 의례적인 축하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제한기간의 근무시간에도 가능할 것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 · 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없음.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 공공기관의 예시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기관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규칙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은행
 -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 ※ 방위협의회 · 민방위협의회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 기타 위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 사적행사

- 선거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에 선거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됨.
- 후보자로서 참석하는 사적행사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함.
- 연가기간중 또는 점심시간에 참석하는 사적행사 - 연가기간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정치행사

-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 -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음.
- 소속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적인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 소속 정당의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차집 행사 등 -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 -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음.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등 -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가 아니므로 사무소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가 선거대책기구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에서 개최 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집회에서의 연설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 방문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선거대책기구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나,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 연가기간중의 행사참석 -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2006. 1. 5.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연가를 낸 이상 피고인이 같은 날 당원교육 및 여성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14:00경부터 17:30경까지의 시간대가 ‘근무시간 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2007. 2. 23 대법원 2006도8445)

과태료처분 기준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기준

근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위반내용		처분금액	최고금액	비고
정기검사, 점검지연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검사 : 2만원 점검 : 1만원	30만원	기간만료일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임시운행기간 경과위반	10일이내	5만원	100만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번호판, 허가증 미부착	10만원		
자동차 변경 등록 (사용본거지, 성명등 미필)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45만원	신청기간 : 15일이내
	9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자동차 이전 등록 지연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50만원	신청기간 : 15일이내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자동차 말소 등록 지연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50만원	신청기간 : 1개월이내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수출말소일 경우	20만원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경우 기한내에 등록 미신청시	수출을 사유로 말소 등록한 경우	10일이내	5만원	50만원
		10일경과 매1일 초과시	1만원	
	기타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10만원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이를 양도한 때		5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5만원		
자동차의 등록신청 대행 기간 경과	10일이내	5만원	1000만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	1만원		
자동차의 등록신청대행 거부		50만원		
번호판부착/봉인 불이행		50만원		
번호판/봉인 미부착 운행		3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의무보험 미가입기간(대인)	대인 I		대인 I, 대인 II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10일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최고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대인 I) 1,000,000원(대인 II)
의무보험미가입기간(대물)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10일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재난대피요령

■태풍

- 태풍예보시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시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 태풍영향권에 있을 때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둡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 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저지대·상습침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태풍이 지나간 후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시고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손대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사용 합시다.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근처에 가지 마시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호우

- 호우예보시
 -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시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시다.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시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시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주세요.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 나 군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맙시다.
 -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대설

- 눈이 많이 내릴 때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30cm 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웁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웁시다.
-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알아봅시다.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주기

- 6개월마다 1회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 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정화조
- 년 1회이상 : 기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오수·분뇨 관련업자현황

업종	업체명	등록일 (허가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분뇨수집·운반업	현남정화사	1998. 09.14	장석만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318-9	672-0075
	미화정화사	1997. 08.07	권오은	강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주공아파트 103동 1304호	671-0018
	금성정화사	1997. 12.30	김창현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7-54	671-2950
	양양용역정화사	1997. 03.20	정성화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318-8	672-1238
	삼성정화사	1999. 12.18	이대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 248	673-605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법	신화환경건설(주)	2003. 03.21	양창수	강원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71-19	671-1038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이앤건설(주)	2007. 04..02	박용배	강원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303-3 삼호아파트 상가2층	673-4700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구분	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비고
	계	수집운반	처리	계	수집운반	처리	
현행	12	10	2	15	13	2	
변경	12	12	0	15	15	0	처리비면제
시행시점	2013. 8. 9(금) 반입분부터 시행						

주)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료를 말한다.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료를 말한다.

붉은 태양

2014년 청마(靑馬)의 해! 갑오년의 태양이 떠올랐다.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지는 해와 내일의 뜨는 해가 갖는 느낌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한 해를 떠나보낸 지금 담담하게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한다.

태양은 인간의 생활에 직접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늘 신성시되고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태양계에서 제일 거대한 천체인 태양은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어 공기를 우리 주변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태양이 비치는 정도는 지면의 방향과 지형, 구름과 주변 공기들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구름이 많은 곳에서는 태양빛이 구름에 막혀 우리가 머무는 땅까지 모두 다 내려오지 못한다. 공기의 많고 적음, 공기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가 공기를 이동시키는 이것을 바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바람과 태양

빛은 전기를 생산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자연이 주는 바람과 태양빛이 자원이 되어준다면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어느 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태양빛이 많이 비추는 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기상자원지도이다. 바람과 태양빛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기상자원지도라고 부른다. 기후변화가 대두되면서 세계는 대체에너지 중에서도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인간에게 태양은 과학적이든 신화적이든 동경의 대상이며 신령스러운 존재임에 틀림없다. 어느 아득한 별관에서 일어나는 태양의 빛, 우뚝 솟은 산봉우리를 비껴어 스치는 아침의 햇살, 망망한 바다의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은 인간 문명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에 족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만 한편으로 선뜻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한 당신에게 용기를 내라고 브라보!!!를 외친다.

속초기상대장 이광주

〈2014년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1 납부고지서, 이제 필요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절차 》

현행			
	OCR 고지서를 들고 은행 방문	OCR 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	
개선			
	OCR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조회·납부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 은행 : 총 22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한,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3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도 3~5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4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집니다.

《 인터넷 이용한 납부절차 》

현행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① 납세지 선택 ② 주민번호·성명 ③ 납세번호, 카드번호 입력	결재절차 (공인인증서)
개선				
	위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과세자료 입력 없음	결재절차 (공인인증서)

5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회 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부의 경우 여러 건을 선택 또는 전체납부 가능합니다.
 - 특히,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2014년도 양양군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공고

2014년도 양양군인재육성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년도 : 2014년도

2. 신청기간 : 2014. 1. 27(월) ~ 2. 28(목)

3. 접 수 처 :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양양군청 안전행정과 ☎670-2452) 및 읍·면사무소

4. 장학금 지급대상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시행세칙 제3조)

- 가. 양양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양양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후 국내에 소재한 대학교에 진학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 ※ 공무원 자녀(고등학생) 및 공공기관 등 학비전액 지원자 제외

5. 선발기준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시행세칙 제8조)

- 가. 특별장학생은 우리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대, 포스텍대를 진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이상인자(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나.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0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단,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대, 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 다.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라.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0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바.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6. 장학금 지급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시행세칙 제11조)

- 가.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
- 나. 지급년한 : 1년

7. 장학생 지원절차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시행세칙 제7조)

-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안전행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부서에 제출(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
-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비치

8. 지원 구비서류

- 가. 장학생 신청서 1부.
- 나.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1부.
- 다. 졸업증명서(양양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라. 학교장 추천서(고등학생만 해당)
- 마.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바. 성적증명서(재학생은 직전학년, 신입생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 사. 입상 증명서(특기장학생에 한함) 1부.
- 아. 공적조서와 연구보고서(우수교원) 1부.
- 자. 재산세 과세, 미과세 증명서 1부.
- 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제출) 1부.
- 카.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670-2452)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병무청